

건설기계소유자 유의사항

- 건설기계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30일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.
- 건설기계의 등록말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이내에 등록지의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(위반한 경우 과태료 20만원).
-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(위반한 경우 경과일수에 따라 과태료 최고 50만원).

건설기계등록·검사증



평택시

경기07고7716

4. 건설기계검사란					5. 등록사항변경란			
구분	검사일	유효기간 (까지)	검사기관	담당자성명	연번	변경일자	변경사항	확인
신규등록일 : 2018-10-05								
신규(검사)	2018-09-17	2021-10-04	안전관리원충남본검사소	성시형				
정기검사	2021-09-16	2022-10-04	안전관리원경기본검사소	이수형				
정기검사	2022-09-27	2023-10-04	안전관리원경기본검사소	표성원				
"	23. 9. 21	24. 10. 4	충남	양관숙				
※ 주의사항 : 첫째란에는 신규등록일을 기재합니다. ※ 수입건설기계의 제작연월일의 표기는 수입신고필증의 입항일을 기준으로 하며, 중고수입건설기계는 제작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								